

【 13 】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3. 6. 23.

제출자 양주군수

1.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2003. 2. 24.)되어 종전의 재해위험구역의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정비하며 그밖의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6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 별표1)

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함(안 제9조 및 제16조)

라.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5장 제목, 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제6장 건폐율, 용적률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 18조 및 제19조)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중 “위원장은 위원증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증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회화, 조경, 조형예술”을 “조경”으로 한다.

제8조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제1항 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제3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재해지구안의 건축물”을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중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동법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제2항, 제2항제1호, 제3항, 제3항제1호중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한다.

제6장, 제18조 및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건축허가 수수료(제8조 관련)

연면적 합계	금액 (원)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 기타 7,000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500 기타 15,000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40,000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5,000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50,000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00,000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600,000
30만제곱미터 이상	1,200,0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產生한다.	제6조(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产生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전족, 도시계획, 도시설계, 세녀도,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과 경험, 풍부한지 등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고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과 경험, 풍부한지 등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고용한다.
③ 다만, 등록된 위원회 수는 위원 총수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다만, 등록된 위원회 수는 위원 총수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①~③ 항에 따른	④ ①~③ 항에 따른
제9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제9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6. <u>도시계획법 제5조 제3항</u> 의 규정에 전합할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제5장 재해지구안의 건축물	제5장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제16조(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u>재해위험구역</u>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제16조(건축물의 용도) ① 재해관리구역에 의한 제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u>재해위험구역</u>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 <u>재해위험구역</u> 안에서는 <u>도시계획법</u> 제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강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철수로 인해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의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①~⑥ 항에 따른
③~8. 생략	③~8.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종 <u>재해위험구역</u> 안에서는 <u>도시계획법</u> 제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강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철수로 인해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의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①~⑥ 항에 따른
⑤~7. 생략	⑤~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경 안
제17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17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제8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u>재해위험</u> ----- 구역안의 건축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u>구역</u> ----- 하여야 한다.	----- ----- ----- 재해관리
1. ~5. 생략 ② 법 제54조 제3항 및 영 제86조의2제1항제1호와 그 정에 의한 제2종 <u>재해위험구역</u> 의 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5. 현행과 같음 2. ----- ----- ----- 재해관리구역
2. 생략 ③ 영 제8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3종 <u>재해</u> <u>위험구역</u> 의 건축물을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 <u>재해관리구역</u> 2. 현행과 같음 3. ----- 재해 구역
3. 제2종 <u>재해위험구역</u> 에서 허용되는 구조 2. 생략	1. ----- <u>재해관리구역</u> 2. 현행과 같음)
제6장 건폐율·용적율	
<삭제>	
제18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영 제<삭제>	
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 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 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 림지역 : 40퍼센트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화 경보전지역 : 2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제19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2호 및 영<삭제>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 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서형령 제13조제1 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 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화경 보전지역 : 80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	

현 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건축물과 수수료 제8조 관련		건축물과 수수료 제8조 관련	
제	금액(원)	증명필자	증액(원)
건축주 및 관리인	건축주 및 관리인	증명필자	증액(원)
1. 건축주 및 관리인	건축주 및 관리인	증명필자	증액(원)
2. 10세금미지급 미만	10세금미지급 미만	증명필자	증액(원)
3. 10세금미지급 10만세금미지급 미만	10세금미지급 10만세금미지급 미만	증명필자	증액(원)
4. 10만세금미지급 100만세금미지급 미만	10만세금미지급 100만세금미지급 미만	증명필자	증액(원)
5. 100만세금미지급 300만세금미지급 미만	100만세금미지급 300만세금미지급 미만	증명필자	증액(원)
6. 300만세금미지급 1000만세금미지급 미만	300만세금미지급 1000만세금미지급 미만	증명필자	증액(원)
7. 1000만세금미지급 이상	1000만세금미지급 이상	증명필자	증액(원)

증명필자	증액(원)
20세금미지급 미만	증액 7,000
20세금미지급 10만세금미지급 미만	증액 4,500
1천세금미지급 이상 2천세금미지급 미만	증액 15,000
2천세금미지급 이상 3천세금미지급 미만	증액 40,000
3천세금미지급 이상 6천세금미지급 미만	증액 75,000
6천세금미지급 이상 3만세금미지급 미만	증액 150,000
3만세금미지급 이상 10만세금미지급 미만	증액 300,000
10만세금미지급 이상 300만세금미지급 미만	증액 500,000
300만세금미지급 이상	증액 1,000,000